

의안번호	2219072
의 퇴 인	조승래 의원
회 답 일	2026. 7. 21.
추 계 번호	26A2713

국가데이터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실시,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구축, 민관협 의체 설치 등을 시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4억 7,600만원, 2031년 4억 1,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1억 9,400만원(연평균 4억 3,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102	102	102	102	102	510	102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62	—	—	62	—	124	
실태조사(안 제10조)	82	82	82	82	82	410	82
수요조사(안 제11조)	90	90	90	90	90	450	90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구축(안 제15조)	117	117	117	117	117	585	117
민관협의체 설치(안 제27조)	23	23	23	23	23	117	23
합계	476	414	414	476	414	2,194	439

주: 1.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국가데이터위원회) 및 제7조(분과위원회 등)	○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둠(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의무규정
		○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안 제6조 제7항)	재량규정
		○ 국가데이터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둠(안 제7조제1항)	의무규정
		○ 위원회는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8조 및 부칙 제2조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안 제8조) ○ 최초의 기본계획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함(안 부칙 제2조)	의무규정
3	안 제9조 (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0조 (실태조사)	○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1조 (수요조사)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 확보를 위해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2조 (국가데이터의 지정 등)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지정과 관련하여 대상 데이터의 사전품질 진단·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3조 (국가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15조 (분류체계)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데이터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함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6조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 도의 작성·관리)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 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데이터에 대한 메 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7조 (국가데이터 품질관리)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국가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 질수준의 확보·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진단·평가 결과 우 수한 국가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 국가데이터처장은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 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11	안 제18조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 국가데이터처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국가 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9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 국가데이터처장은 민간데이터를 제공한 민간법인 등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 및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25조 및 부칙 제3조 및 제4조 (한국데이터원의 설립)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 및 활 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하며, 정부는 데이터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25조)	재량규정
		○ 한국데이터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 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하 ‘재단 법인 연합회’라고 함)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안 부칙 제3조)	재량규정
		○ 재단법인 연합회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한국데이터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 데이터원이 포괄 승계함(안 부칙 제4조)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26조 (국가데이터 전문기관)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7조 (민관협업체의 설치·운영)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민간법인등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업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8조 (품질인증)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29조 (연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추진)	○ 정부는 데이터 보호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실증, 메타데이터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 및 실증, 표준 개발 등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30조 (교육·훈련의 지원)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31조 (국제협력)	○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관리·연계·활용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 국가데이터 활성화 관련 정책 및 관리·연계·활용 기술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해외협력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보호기술 지원 및 전수를 위한 교류활동	재량규정
20	안 제34조 (벌칙)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1	안 제35조 (과태료)	○ 한국데이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안 제32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 (국가데이터위원회) 및 안 제7조 (분과위원회 등)	○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	
		○ (분과위원회 설치)	
		× (특별위원회 설치)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무국 설치)	
2	안 제8조 및 부칙 제2조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	
3	안 제9조 (국가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	×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없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4	안 제10조 (실태조사)	○	
5	안 제11조 (수요조사)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2조 (국가데이터의 지정 등)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 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13조 (국가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	
8	안 제15조 (분류체계)	○	
9	안 제16조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작성)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 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한국데이터원은 현행 재단법인 연합 회의 모든 소관 업무·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향후 사업 및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국가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 서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함
10	안 제17조 (국가데이터 품질관리)	×	
11	안 제18조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	
12	안 제19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	
13	안 제25조 및 부칙 제3조 및 제4조 (한국데이터원의 설립)	×	
14	안 제26조 (국가데이터 전문기관)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 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 터 활용확산 정책지원」사업(정보통신 진흥기금, 코드:2601-303)의 내내역 사업으로 AI 등 데이터 기반 혁신 서 비스·제품의 신뢰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기업이 생산·활용·유통하는 데 이터의 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를 지원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기획·운 영사업을 실시 중이며, 동 사업의 2026 년 예산은 5억 5,000만원임
15	안 제27조(민관협의체의 설치·운영)	○	
16	안 제28조(품질인증)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 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 터 활용확산 정책지원」사업(정보통신 진흥기금, 코드:2601-303)의 내내역 사업으로 AI 등 데이터 기반 혁신 서 비스·제품의 신뢰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기업이 생산·활용·유통하는 데 이터의 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를 지원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기획·운 영사업을 실시 중이며, 동 사업의 2026 년 예산은 5억 5,000만원임
17	안 제29조(연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추진)	×	
18	안 제30조(교육·훈련의 지원)	×	
19	안 제31조(국제협력)	×	
20	안 제34조(벌칙)	×	
21	안 제35조(과태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중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참석 수당) 등의 비용으로 가정
 -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성이 있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을 5:5 비중(각각 20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개최 횟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최근 3년(2023~2025년)간 연간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17회로 가정
 -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 수당은 ‘국가통계위원회’의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 수당을 감안하여 30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회의 개최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기존에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행된 연구 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기존에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 관련 실태조사 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국가데이터 지정에 관한 수요확인을 위한 수요조사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기존에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 관련 수요조사 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국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구축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기존에 유사한 분류체계 구축 관련 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민관협의체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참석 수당) 등의 비용으로 가정
 - 민관협의체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성이 있는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¹⁾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와 같이 민관협의체 위원은 20명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민간위원을 13명으로 가정
 - 개최 횟수는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의 연간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6회(격월)로 가정
 -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 수당은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의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 수당과 같은 30만원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안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의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1,000만원(연평균 1억 200만원)으로 추계됨
 - (구성) 제정안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을 5:5 비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원을 20인으로 전제하여 추계함
 - (횟수) 회의 개최 횟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최근 3년(2023~2025년)간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17회로 가정하여 추계함

1)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정책 과제 발굴, 제도 개선 등 실무 중심의 협의를 위해 2026년 2월 23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통계위원회의 최근 3년(2023~2025년)간 본회의 및 분과회의의 총 개최 횟수는 2023년 14회, 2025년 19회이며, 연평균 17회로 나타남

[표 2] 국가통계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현황: 2023~2025년

(단위: 회)

구분	2023	2024	2025	연평균
본회의	1	2	2	2
분과회의	13	16	17	15
합 계	14	18	19	17

자료: 국가데이터처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단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 참석 수당은 ‘국가통계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감안하여 회당 3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국가통계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은 2026년 기준 민간위원 1인당 30만원(서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²⁾

[표 3]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간위원 수×회의 횟수×회의 수당)	102	102	102	102	102	510	102

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단가는 민간위원 20명, 회의 개최 횟수 연 17회, 회의 참석 수당 30만원 가정

나.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부칙 제2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3년 단위로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2,4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과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 관리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행된 연구 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2) 국가데이터처 답변자료

[표 4] 제정안과 유사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제3차('27~'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	79
과기정통부 데이터 관리체계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59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과기정통부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59
보건복지부 공동활용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21	50
평균			62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https://www.prism.go.kr/>)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2027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5]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	62	-	-	62	-	124

다. 실태조사 (안 제10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억 1,000만원(연평균 8,200만원)으로 추계됨

- 실태조사는 제정안과 유사도가 높은 실태조사 용역비 평균 수준(8,20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6] 제정안과 유사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2026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	150
2026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컨설팅	축산물품질평가원	2026	59
2026년 전분야마이데이터 정책 만족도 및 참여기관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26	50
데이터직무 프레임워크 개발 및 및 수급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70
평균			82

주: 연구용역 금액은 단수 조정을 위해 반올림한 값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https://www.prism.go.kr/>)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82	82	82	82	82	410	82

라. 수요조사(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 지정에 대한 수요확인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억 5,000만원(연평균 9,000만원)으로 추계됨
- 수요조사는 제정안과 유사도가 높은 수요조사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 수준(9,00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주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8] 제정안과 유사한 수요조사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주요 제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공데이터 수요 심층조사	산업통상자원부	2024	60
2024년 데이터자원 활용 및 수요 현황조사 용역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4	90
2023년 데이터자원 활용 수요조사 용역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3	110
2023년 데이터안심구역 수요조사 용역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3	100
평균			90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https://www.prism.go.kr/>)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표 9] 수요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수요조사	90	90	90	90	90	450	90

주: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마.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구축(안 제15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8,500만원(연평균 1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구축은 제정안과 유사한 분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 수준(1억 1,70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분류체계 구축·개선 수요가 데이터 항목별로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³⁾

[표 10] 최근 분류체계 구축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데이터처	2026	98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142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국가유산청	2017	111
평균			117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https://www.prism.go.kr/>)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표 11]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분류체계 구축	117	117	117	117	117	585	117

주: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바. 민관협의체의 설치·운영(안 제27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1,700만원(연평균 2,300만원)으로 추계됨
 - (구성) 제정안과 유사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와 같이 위원 구성을 20명으로 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13명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3) 국가데이터처는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데이터 항목별로 분류체계 관련 연구용역 수요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는 입장임(국가데이터처 답변자료)

- (횟수)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의 연간 개최 횟수를 고려하여 연간 6회(격월)⁴⁾로 가정하여 추계함
- (단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 참석 수당은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의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 수당 30만원⁵⁾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12] 민관협의체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 (민간위원 수×회의 횟수×회의 수당)	23	23	23	23	23	117	23

주: 1.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단가는 민간위원 13명, 회의 개최 횟수 연 6회, 회의 참석 수당 30만원 가정
2.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국가데이터처 답변자료

5) 국가데이터처 답변자료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